

분야별 자격증가산비율표 (제31조제2항관련)

1. 행정직군 및 과학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가산비율

구분	6·7급		8·9급	
가산대상 자격증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사회복지사 1급,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석사 2급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사회복지사 1급,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가산비율	5%		3%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11 2. 과학기술직군 및 우정직군의 직급별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과학기술직군 및 우정직군의 직급별 가산비율

구분	6·7급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비고: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12의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